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3680호 |
|----------|--------|

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0월 10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0월 2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‘장기근속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’ 사항을 반영하고, 맞춤형 복지제도와 단체 보험의 별도 운영에 따른 직원 단체 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맞춤형 복지제도와 단체 보험 별도 운영에 따른 해당 조문 삭제
- 나. 직원 건강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유연하고 포괄적인 조문으로 개정하고 단체 보험의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 (안 제7조제1호 및 제3호)
- 다.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조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무원을 선정하고자 산업시찰 대상자를 장기근속 “모범” 공무원으로 개정 (안 제7조제7호)
- 라. 김포시 및 김포시의회 후생복지사업 통합운영 근거 마련(안 제11조)
- 마. 그 밖에 용어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